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계획 재공고

서울특별시 일반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18년 2월 13일

서울특별시제1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

임용분야	임용등급	임용 인원	근무 기간	근무예정 부 서	담당직무 내용
노동조사 지원요원	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	1명	2년	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	- 시산하 사업장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조사 - 노동조사 시정결과 이행상황 점검 - 사업장 노무관리 지도

※ 근무기간은 근무실적 우수시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함.

2. 법령 근거

- O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
- O 지방공무원 임용령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
- O 서울특별시 인사규칙

3. 응시 자격 요건

- 공통 응시자격요건 (기준일 : 면접시험시행 예정일)
 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,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 및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※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.
-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「형법」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지역.연령.성별 : 제한 없음

○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요건 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)

구 분	응시자격요건
일반 임기제	1. 학사학위 취득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행정 7급	2.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(경 력)	3. 8급 또는 8급 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

- ※ 관련분야 실무경력 인정범위
 - 노동관련 국제기구나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소(국공립연구기관, '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'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, '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, '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'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,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연구기관), 민간기업의 노무부서에 근무한 경력
 - 노동조합 등 법인 및 단체에서 단체교섭이나 근로관계 업무에 종사한 경력
- ※ 우대조건 :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한 후 관련분야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

4. 보수 수준

○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,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·능력·경력 등 을 고려하여 협의결정함

[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(보수규정 제34조 관련)]

(단위: 천원)

구 분	상 한 액	하 한 액
7급(상당)	57,243	40,657

※ 연봉외 급여는「지방공무원보수규정」및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 (208년 보수 기준 공지시 이에 따른 상향분 추가반영 예정)

5.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

○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 : 2018. 2. 23(금) ~ 2. 27(화), <3일간 09:00~18:00>

- 접수방법 :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(등기)

. 마감일 근무시간(18:00)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

- 접 수 처

구 분	주 소		
일반임기제(7급)	(우편번호04520) 서울특별시 중구 무료로 21		
지방행정주사보	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8층 노동정책담당관		

- ※ 응시원서 양식(응시원서, 이력서, 자기소개서 등)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
- ※ 서울특별시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
- ※ 대리접수,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

○ 시험일정(안)

내 용	일 정	장 소
시험 공고	2018. 2. 13.~ 2. 22	
응시원서 접수	2018. 2. 23.~ 2. 27	방문.우편접수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2018. 2. 28.	
면접시험	2018. 3. 2. 예정	서울시청 무교별관 8층
최종합격자 발표	2018. 3월 예정	

※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

가. 1차시험(서류전형)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
- 단,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※ 서류전형기준은 직무 연관성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에서 별도 설정,시행

나. 2차시험(면접시험): 개별통보

-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
- 자질 및 발전가능성, 전문성,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,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 격이 부여됨.

다. 최종합격자 발표 :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

※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,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
6. 제출서류

- 응시원서(별지1호 서식) 1부
 - 사진 :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
 - 응시수수료 : 서울특별시수입증지 7,000원(서울시청 신청사 1층 민원실 판매)
- ※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,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이력서(별지2호 서식) 1부
 -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경력내용이 불분 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 건강 보험자격득실확인서(국민건강보험공단「http://www.nhic.or.kr」발급) 등 증빙자료 제출
- 자기소개서(별지3호 서식) 1부
-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(별지4호 서식) 1부
- 직무수행계획서(별지5호 서식) 1부
-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(원본), 학위증서 사본 1부(원본 지참)
 -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,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
- O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원본)

-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이내 발행분(원본)에 한해 인정
- 근무기간, 직위,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
-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,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
- O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(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)
- 해당외국어(영어)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(해당자에 한함)
- 민간부문 업무활동 세부명세서,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
 - 서울특별시의 **5급(상당)이상**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」 제16조에 따라 임용 전 민간부문 활동에 대한 "업무활동세부명세서 및 이해관계 충돌시 직무회피 서약서"를 제출하여야 하며, 임용 후 2년간 직무연관성 이해관계 여부를 심사받게 됨
 - ※ 최종합격자 결정 후 임용후보자 등록시 제출
- 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- *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(경력증명서 제외), 법에서 정한 유효 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,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
- *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7. 기타(유의)사항

- O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.
- 제출된 서류 및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,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.
-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 조사 및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- ○「지방공무원임용령」제65조(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)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,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.
- 응시원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응시 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)
-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 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(서류전형결과 부적 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 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
-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채용시험란에 공고합니다.
- O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노동정책담당관 담당(김용환 ☎ 2133-5413)